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치매환자의 보호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동의〉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59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치매환자의 보호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동의(안 제26조 제1 항 제4호 및 제2항 제4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11. 26.

다. 회 부 일 : 2024.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과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치매환자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제29조제2항제3호)에 한하여 개인위치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보호의무자로서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Ⅲ. 검토의견

1. 치매환자의 보호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동의(안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4호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의무자가 치매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치매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26조 제1항 제4호 신설).
- 위의 보호의무자란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¹⁾(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의 장을 말함(제2항 제4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

1)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현행	개정안
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 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수는 2020년 약 84만명, 2021년 약 89만명, 2022년 약 94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개정안은 보호의무자가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신 동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실종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치매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치매환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치매의 중증도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신 동의할 필요성과 적절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인위치정보는 특정인의 활동반경이나 이동방향, 취미나 관심사 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며, 오·남용시 심각한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 및 동의의 철회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함.
- 그런데 아동, 피성년후견인 등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여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개인위치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움.

○ 이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²⁾는 이러한 ‘8세 이하의 아동등’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신 동의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현행법상 ‘8세 이하의 아동등’은 ① 8세 이하의 아동, ② 피성년후견인, ③ 정신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임.

○ 반면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의 증상 및 진행상태에 따라 스스로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인식을 갖추어 보호의무자가 대신 동의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보호의무자의 대리가 오히려 환자의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참고로 2022년 중증도별 추정치매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추정치매환자 중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큰 무리가 없는 초기(최경도, 경도) 치매환자의 비율이 58.8%에

2)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³⁾.

○ 따라서 치매환자 중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대한 대리가 필요한 자의 범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치매관리법」은 치매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⁴⁾.

○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현재도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거쳐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⁶⁾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위치

3)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중앙치매센터, p. 19

4)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5)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6)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피성년후견인

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신 동의할 수 있는바, 현행법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음.

- 이에 반해 개별 환자의 의사능력의 정도에 대한 확인 없이 환자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게 되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환자의 동의권이 침해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0